구제역,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서 막아내자



대 한 한 돈 협 회



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9 제2축산회관 3층 / ☎(02)581-9751~4.8 / Fax581-9768 경영기획부

문서번호 한돈협경 제121-1호

시행일자 2022. 1. 13.

수 신 각 도협의회장 및 지부(회)장

참 조

선 결			지 시	
접수	일자 시간 번호		결 재·공	
처리과 담당자			· 공 람	

제 목 제49차 대의원 정기총회 추가 대의원 명단 제출 요청

- 1. 도협의회장 및 지부(회)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- 2.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49차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
- 3. 이에 추가 대의원이 배정된 각 지부에서는 지부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대의원을 선출한 후 본회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4. 또한 경기·전남·경북도협의회장은 도내 회원수 10명 미만의 지회를 연합하여 회원수 10명 이상이 될 경우 1명의 지회장(회원수가 많은 지회장, 동수의 경우 연장자)을 대의원으로 선정하여 추가 대의원 명단 제출 마감일까지 본회에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정기총회 일정

○ 일 시 : 2022년 2월 23일(수) *예정

※ 제1차 이사회(2/8) 결과에 따라 일시 변경 가능

나. 추가 대의원 명단 제출

1) 제출기한 : 2022년 1월 26일(수), 18:00 까지

2) 제출처 : 대한한돈협회 경영기획부 (팩스 : 02-581-9768)

- 3) 본회 대의원 자격(본회 대의원선출규정 제3조)
- 가) 당연직 대의원
 - ① 본회 임원, 도협의회장, 지부장
 - ② 지회장은 해당지역 300두 이상 사육농가수가 20호 이하이면서 지회 회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
- 나) 추가대의원
 - ① 지부 회원 15명을 기준하여 15명 추가시마다 대의원 1명 추가
 - ② 회원수 10명 미만인 지회의 경우 <u>도협의회장이 도내 10명 미만의</u> 타 지회와 연합하여 회원수 10명 이상이 될 경우 1명의 지 <u>회장을 대의원으로 선정(회원수가 많은 지회장, 동수의 경우</u> 연장자)한후 추가대의원 선출·명단 제출 마감일까지 본회 선거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<u>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하면</u> 해당 지회장에게 대의원 자격 부여
 - ※ 추가대의원 선출 지부 회원수 기준 : 2021년 9월말 기준
- 4) 대의원 배정 현황 : 208명
 - 가) 임원 : 14명(지부장 겸직자 16명 제외)
 - 나) 지부(회)장 : 194명(당연직 대의원 107명, 추가 대의원 87명)

78		대의원		78	대의원		
구분	계	당연직	추가	구분	계	당연직	추가
경기도	35	13	22	전라북도	19	12	7
강원도	9	7	2	전라남도	19	14	5
제주도	12	4	8	경상북도	25	18	7
충청북도	10	9	1	경상남도	25	17	8
충청남도	40	13	27	합계	194	107	87

* '지부(회)별 대의원 수 현황(2021, 9월말 기준)' 첨부 참조

첨 부 : 1) 추가 대의원 명단 제출 공문 양식(예시) 각 1부.

- 2) 취임승낙서 1부.
- 3) 지부(회)별 대의원 수 현황(2021. 9월말 기준) 1부

※ 첨부자료 양식 : 협회 홈페이지/지부소개/지부알립시

끝.

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